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년 7월 25일

발의자 : 박선미 의원

1. 주 문 :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1년 처음 지정되었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종 행위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축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시의 단속과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3. 이 송 처 :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하남시장.

4. 결의문(건의안) : 붙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1년 처음 지정되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각종 행위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정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2%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 33만을 넘는 도시로 성장했다. 미사·위례·감일 신도시에 이어 제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까지 국가 주도로 개발되면서 도농복합 도시의 면모는 사라졌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상도 변화하여 농업인구는 급감했고, 현재 남아있는 축산농가는 단 2곳뿐이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 축사이다. 현행법상 이들 건물은 동물을 기르는 축사나 지역 내 농수산물 보관 창고로만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만,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돼지·닭 등 축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의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용도조차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축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시의 단속과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7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이를 ‘도시의 허파’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이라 주장했다. 물론 그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그린벨트 주민들의 오랜 희생 또한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난 54년간 국가 정책에 협조하며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하고도 묵묵히 견뎌왔다.

개발제한구역은 정부의 개발 유보지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가진 땅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정부가 개발에 나서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뿐이다. 정부는 이제 그린벨트 주민의 생존권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의 기존 축사에 대해, 현행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 뿐 아니라 ‘물류창고’ 로의 용도변경도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도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기초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소외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로 인해 큰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하남시는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하며, 더불어 정부에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일부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만큼, 하남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해제 절차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5일

하 남 시 의 회